



'09/9월 23일 당진군 현안과제 정책토론회

당진군 시 승격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임 승 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I.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영역과 경제사회의 변화비율

- 지역의 경제구조와 행정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행정구역이 경제구조, 지리적 공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사회, 정치 분야는 서로 연계되어 빠르게 발전했고, 종종 행정의 시행은 멀리 뒤쳐질 수밖에 없다. 경제의 발전 속도에 행정의 변화를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행정체제가 뒤쳐지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 경제사회의 발전과 행정의 뒷전은 변화하는 행정수요, 기능, 재정 및 다른 환경,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 부족으로부터 연관된다. 많은 변화들에 대해 정부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지역과 국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R.Bennett:3-4).
- 하지만 긴 시간에 걸쳐 이와 같은 양자 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행정 체제의 변화를 꾀하지만 시간의 차이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Ⅱ. 자치행정 구역 규모와 명칭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자치행정구역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

- 행정서비스를 처리하는 자치구역의 설정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기준은 시대와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구역설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 구역개편의 기준에 관련해서는 Kingdom(1991)의 기준 등이 있으나 이들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자치구역이라 함은 역사성, 주민의 접근성, 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 경제적 규모성, 정치적 역량성 등을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임승빈, 2006).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자치단체의 구역개편시의 대내외의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자치행정 기능수행과 관련되어 구역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자치행정기능 수행과 자치구역간의 규모의 상관성은 적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행정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의 재 배분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II. 자치행정 구역 규모와 명칭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지방자치 선진 외국에서의 자치단체 기능과 명칭문제

- 앞서 언급한 경제사회 구역과 그곳을 통치하는 자치행정구역과의 불일치의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가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R.Bennett:3-4).
- 첫째는 기술의 변화와 진보속도가 빨라진 결과로 나타나는 가속화된 경제의 변화이며,
- 둘째는 정치적 우선사항과 정책문화의 형태에 따른 합의형태와 사회구조의 변화이다. 경제의 재구조화로 발생한 불일치는 서유럽과 사회주의자들에게(당연히 다른 방식이겠지만) 깊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두 체제가 서로 비교되고 배우게 함으로써 서로를 교차시키는 공통적 환경이다. 공통의 환경은 사회발전과 경제변화의 유사한 압력을 이끌어낸다. 단절의 유사성은 각기 다르지만 같은, 적응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행정체제의 현상들을 이끌어낸다. 유사성과 공통의 환경은 별개지만 이어질 내용에서는 동일한 운영체제가 이끌어내는 것으로 설명된다.

Ⅱ. 자치행정 구역 규모와 명칭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지방자치 선진 외국에서의 자치단체 기능과 명칭문제

- 따라서 국가에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펴는 중앙부처의 지역행정 단위(Level), 즉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각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이 일치할 수 없으며 양자 간에는 협조와 갈등이라는 상호작용을 갖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양화된 정부부처와 Level을 가진다. 정부의 기능수행 방식은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중복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광역정부-기초정부 간의 어느 정도의 중복을 피할 수는 없다. 다음의 <표 1>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Ⅱ. 자치행정 구역 규모와 명칭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지방자치 선진 외국에서의 자치단체 기능과 명칭문제

<표 1>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간 기능수행 방식의 비교

구 분	교육	주택	보건/병원	복지	청소	관광	소방
Belgium	PM	RM	PM	MP	M	RMP	M
Denmark	C	CM	C	CM	M	SCM	M
Finland	M	M	M	SM	M	M	SRM
France	N(DM)	M	S	MD	M	SDM	M
Greece	N	N	N	NM	M	NM	N
Germany	SM	SM	C	SM	M	SM	M
Ireland	N	CB	N	N	CM	M	CM
Italy	P	PM	R	RPM	PM	RPM	M
Netherlands	M	PM	PM	M	M	PM	M
Norway	CM	M	C	M	M	M	M
Portugal	N	N	N	N	NM	NM	NM
Spain	PM	M	SRM	RM	PM	NRPM	NRM
Sweden	M	M	C	M	M	MC	M
Switzerland	CAM	M	CAM	M	M	CAM	CA
UK	(CM)	M	N	NC	CM	CM	CM
대한민국	중앙/시도	중앙/광역/시군구	중앙/광역/시군구	광역/시군구	시군구	중앙/광역/시군구	광역
일본	시정촌	광역/시정촌	광역/시정촌	시정촌	시정촌	광역/시정촌	시정촌

주: C=County, M=Municipal, N=National, S=State, R=Regions, P=Provincial, D=Department(F), CA=Canton.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필자가 기입하였음.

출처:OECD(1977)*Managing Across Levels of Government*. <http://www.oecd.org/puma/malg/malg1997>. Peter John(2001). *Local Governance in Western Europe*. London:SAGE Publications. p.36의 Table2.2를 인용.

Ⅱ. 자치행정 구역 규모와 명칭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지방자치 선진 외국에서의 자치단체 기능과 명칭문제

- <표 1>은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간 기능수행 방식은 정책기능 비교가 아닌 집행기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에서 지방행정 서비스 집행부문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마저도 중복되게 나타나는 것은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다수의 분야에서 보유하고 직접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Ⅱ. 자치행정 구역 규모와 명칭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지방자치 선진 외국에서의 자치단체 기능과 명칭문제

○ 기초자치단체의 명칭문제

- 프랑스의 경우에는 파리시나 인구가 1,000여명에 지나지 않는 수천여개의 지역이나 모두 Commune이라고 함
- 독일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Gemeinder라고 함
- 일본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시(市), 정(町), 촌(村)으로 구분하였으나 2001년도부터 시정촌 통합을 진행하여 2009년 현재는 약 1,800여개의 시정촌으로 구성되어 있음. 통합된 지역은 평균 6만명 정도로 되었으며 시(市)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음. 또한, 일본은 시(市)라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 가운데서 기능적 권한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일반시 등 다양하게 자격기준을 두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이 City, Town, County(기초와 광역의 중간수준) 등으로 다양하나 공식적으로는 Municipal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있음

각국 자치단체의 계층 및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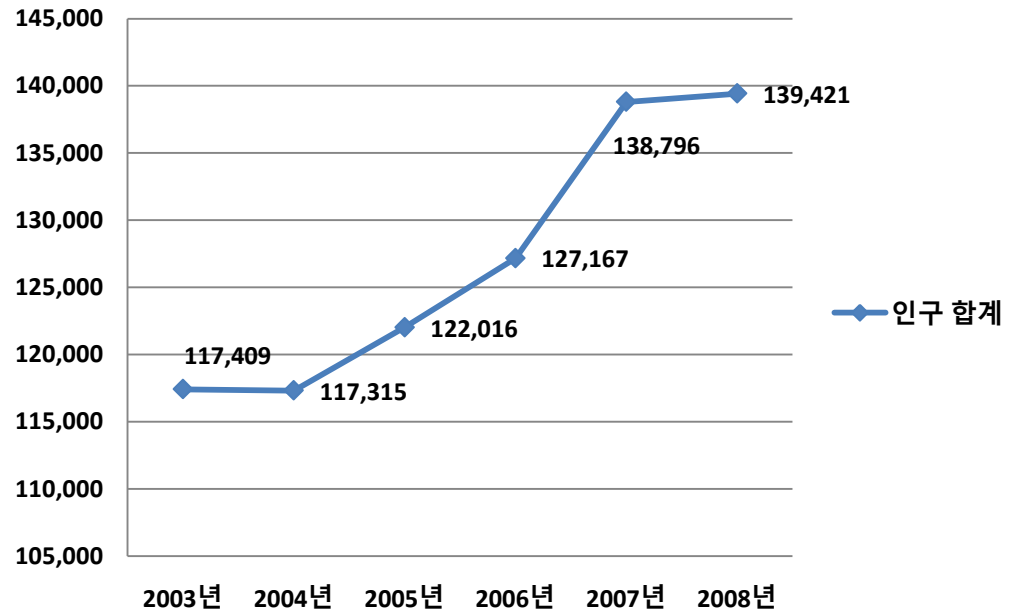
국가명		기초자치 단체	수	광역자치 단체	수	주 또는 Region	수
영국	잉글랜드	Non-metropolitan Districts	298	Counties London boroughs & City of London Metropolitan Districts	45 62 68		
	웨일즈	Non-metropolitan districts	67	Counties	8		
	스코틀랜드	Districts	58	Regions Islands	8 8		
독일		Gemeinde(s)	8,848	Kreise Kreisfreie Stadt (Städte)	428 121	Land(Länder)(8 city-states 포함)	18
미국		Municipalities Towns/Townships	19,200 18,891	Counties(City-County 포함)	6,408	States	50
프랑스		Communes(s)	68,488	Département(s) (Ville de Paris 포함)	98	Région(s)	22
이탈리아		Comune (Comuni)	8,704	Province (Province)	94	Régione (Region)	
네덜란드		Gemeente(s)	714	Province(s)	12		
스웨덴		Kommune(s)	284	Landskapkommune(s)	28		
스위스		Communes(s)	6,021			Cantons	28
덴마크		Municipalities(94 towns/cities과 888개 기타 공유자치 단체 포함)	484				

Ⅲ. 당진군의 시 승격 필요성

1. 신규 진입 인구의 증가

〈표〉 당진군의 인구(2008년 12월 기준)

구분	인구		
	계	남	여
합계	139,421	72,223	67,198
당진읍	42,898	21,528	21,370
합덕읍	11,613	5,998	5,615
고대면	6,596	3,419	3,177
석문면	8,165	4,162	4,003
대호지면	3,035	1,539	1,496
정미면	4,130	2,109	2,021
면천면	4,270	2,230	2,040
순성면	6,707	3,472	3,235
우강면	6,833	3,429	3,404
신평면	13,835	7,130	6,705
송악면	21,547	11,813	9,734
송산면	9,792	5,394	4,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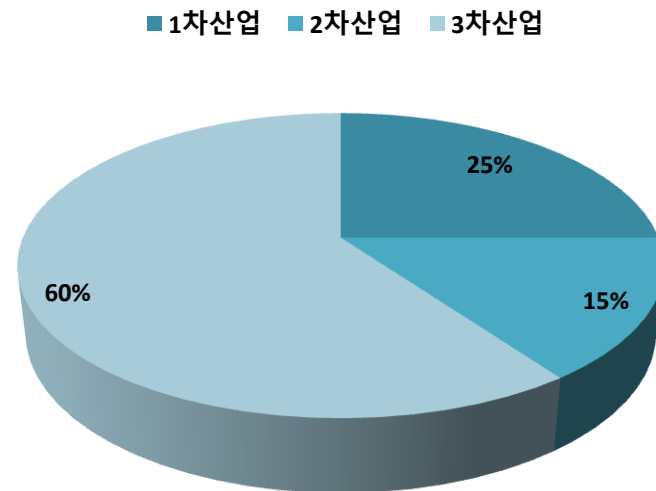
- 위의 표는 당진군의 2008년 12월 기준의 인구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래프는 2003년부터 당진군의 인구 추이를 보여줌
- 2003년 이후 당진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당진읍과 송악면의 인구 증가추세가 뚜렷함.

Ⅲ. 당진군의 시 승격 필요성

2. 도시형 산업으로의 변화

- 산업은 1차산업 25%, 2차산업 15%, 3차산업 60%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특산물은 당진쌀·파리고추·느타리버섯·두견주·방울토마토 등
- 농경지: 전,답 273.75km², 임야248.83km²
- 농가 수 : 14,351가구, 38,747명
- 사업체수: 7,593개소, 종사자수 34,945명

〈표〉 당진군의 산업구성(2003년 기준)



농가				농가인구		
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계	남	여
14,351	9,098	2,870	2,383	38,747	18,908	19,839

IV. 우리나라의 시(市) 자격기준과 변경 문제

1. 현행 자치법상에서의 시(市) 자격에 관한 규정과 실제 적용과의 모순

1)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시(市) 승격의 기준

○ 현행 「지방자치법」 상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우리나라의 시(市) 자격기준과 변경 문제

1. 현행 자치법상에서의 시(市) 자격에 관한 규정과 실제 적용과의 모순

2) 자치법상에서의 규정개정에 의한 시(市) 설치사례

- 정부는 지난 2003년 인구 3만 7천여 명에 불과했던 충남 계룡시의 시(市) 승격을 허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전례가 있음.
-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IV. 우리나라의 시(市) 자격기준과 변경 문제

1. 현행 자치법상에서의 시(市) 자격에 관한 규정과 실제 적용과의 모순

3) 인구 이동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 일률적 기준 적용 유지의 곤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 정치면에서의 변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인구는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음.
- 즉, 시(市) 승격 당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 때때로는 군(郡)지역의 인구밀도가 오히려 높으며 군 지역이 도시행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표 5>, <표 6>을 참조).

IV. 우리나라의 시(市) 자격기준과 변경 문제

1. 현행 자치법상에서의 시(市) 자격에 관한 규정과 실제 적용과의 모순

〈표 5〉 인구 15만 이하 시(市) 현황 ('08.1.1현재)

시	인구(명)	시	인구(명)	시	인구(명)
경기 오산	145,825	전북 정읍	124,239	전남 나주	95,439
경북 김천	139,084	경북 영주	115,083	전북 남원	89,247
전남 광양	138,865	경남 사천	112,499	경기 동두천	88,780
경기 하남	137,131	경남 밀양	111,473	강원 속초	85,370
충북 제천	136,218	충남 보령	107,637	경북 문경	74,780
경기 의왕	135,009	경북 상주	106,600	강원삼척	70,791
경남 통영	134,431	경북 영천	105,819	경기 과천	62,291
충남 논산	129,486	전북 김제	97,615	강원 태백	51,490
충남 공주	126,612	강원 동해	96,652	충남 계룡	37,775

IV. 우리나라의 시(市) 자격기준과 변경 문제

1. 현행 자치법상에서의 시(市) 자격에 관한 규정과 실제 적용과의 모순

<표 6> 인구 10만 이상 군(郡) 현황('08.1.1현재)

도	시	인구(명)	면적(km ²)	비 고
충북(忠北)	청원(淸原)	143,021	814.13	내수읍 : 22,912 오창읍 : 36,502
충남(忠南)	당진(唐津)	136,254	665.52	당진읍 : 50,132 * 42,733명 (4.21)
경북(慶北)	칠곡(漆谷)	113,851	450.86	왜관읍 : 31,021 북삼읍 : 24,660 석적읍 : 24,333
경기(京畿)	여주(驪州)	106,926	607.78	여주읍 : 51,128

IV. 우리나라의 시(市) 자격기준과 변경 문제

2. 시민(市民)과 군민(郡民)의 조세 부담 및 행정서비스의 차이

- 군(郡)이 시(市)로 승격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이미지 개선 등 상징적 효과도 있음
- 반면에 동(洞) 주민의 재산세(공장용 건축물) 증가, 농어촌 대학특례 입학 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경감(22%) 혜택 상실 등 주민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증가로 행정비용이 상승할 우려도 적지 않음(<표 7> 참조).

IV. 우리나라의 시(市) 자격기준과 변경 문제

2. 시민(市民)과 군민(郡民)의 조세 부담 및 행정서비스의 차이

<표 7>시 자격 취득에 따른 변동사항(郡→市)

구 분	郡	市(인구 10 ~ 15만)	변동사항
보통교부세 (교부세법시행령제4조, 시행규칙 별표1의2)	군 산정기준 적용	시 산정기준 적용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은 변동, 자치단체 종류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감되진 않음
행정기구 (기구정원규정 제13조)	局 단위기구 없음 16과 설치	2局 설치 가능 총액인건비 범위내 課단위 자율 설치	局, 課 설치로 인해 기구 확대 가능 (행정비용 상승)
면허세 (지방세법 제164조)	1종 ~ 5종 (18,000 ~ 3,000원)	1종 ~ 5종(洞지역) (30,000 ~ 5,000원)	주민부담 증가
재산세 (지방세법 제188조)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세율 2.5/1000)	주거지역내(洞) 공장용 건축물 (세율 5/1000)	주민부담 증가
도로유지보수 (도로법 제22조)	郡道 이하만 군에서 관리	국도·지방도·시도 모두 市에서 관리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농어촌지역 고교생 대학교 특례입학 (고등교육법시행령 별표1)	수혜대상 (읍·면 지역) ※ 학교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모집 단위별 10%이내)에서 정원외 선발	洞으로 변경시 혜택 상실	특례입학 대상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및 시행령 제43조의3)	50% 감면 (농어업인 지원 28%, 농어촌 경감 22%)	비농업인 22%감면혜택 상실 주거·상업·공업지역 거주 농업인 50%감면혜택 상실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상실

V.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근본적, 점진적 개정을 위한 대안

1. 자치법 7조의 근본적인 개정방안

-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시(市) 자격기준은 도시행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낮은 기준임
 - 첫째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도시의 이미지인 시(市)라는 명칭으로 가고자 함.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군(郡)은 폐지한지 오래되며 우리의 읍과 면에 해당되는 정(町), 촌(村)의 신설은 없으며 자치단체간 통합하면 거의 예외없이 시(市)로 됨
 - 둘째는, 도시화의 진행속도는 농촌지역으로 분류한 군(郡)단위에서도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시와 군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도(道)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시(市)와 군(郡)으로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실익이 없으므로 시와 군을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고 모든 도(道)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시(市)로 바꾸는 방안임
 - 시(市)안에서 기능의 범위에 따라 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 등 명칭을 달리하되 이 역시 외부적인 명칭은 시(市, city)로 통일시키는 것이 행정비용이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V.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근본적 개정 및 점진적 개정을 위한 대안

2. 자치법 7조의 점진적인 개정방안

○ 현행 지방자치법 7조 적용의 불형평성

- 「경북 칠곡군」의 인구는 2008년 5월 1일 기준으로 총 11만 8,322명(왜관읍 3만 1,529명, 석적읍 2만 5,040명, 북삼읍 2만 4,888명), 「충남 당진군」의 인구는 13만 6,254명(당진읍 4만 2,733명)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①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 ②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5만 이하의 시(市)는 27개이고, 더구나 인구 10만 이하의 시(市)도 11개에 이르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되었던 도농복합형태의 시 가운데에서도 현행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법의 형평적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적절치 못함.

○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7조에서의 인구 15만을 인구 12만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불형평성이 어느 정도 시정될 것으로 보임

-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표 8>과 같이 충북 청원군, 충남 당진군, 경북 칠곡군, 경기 여주군이 해당될 것임.

V.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근본적 개정 및 점진적 개정을 위한 대안

2. 자치법 7조의 점진적인 개정방안

〈표 8〉 개정안 요건에 따른 인구 10만 이상 군(郡) 시 승격여부

인구 10만 이상 군(郡)		현행 요건 적용시	개정안 요건 적용시
명칭	현황('08.1)		
청원군 (2읍12면)	인구-143천, 면적-814km ² (내수읍 23, 오창읍 37)	2개읍 인구가 5만 이상 군 전체가 15만 미만 ⇒ 시설치 불가	2개읍 인구가 5만 이상 군 전체가 12만 이상 ⇒ 시설치 가능
당진군 (2읍10면)	인구-136천, 면적-666km ² (당진읍 51, 합덕읍 11)	당진읍 인구가 5만 미만으로 감소('08.4) ⇒ 시설치 불가	개정안의 요건과 무관
칠곡군 (3읍5면)	인구-114천, 면적-451km ² (왜관읍 31, 북삼읍 25, 석적읍 24)	2개읍 인구가 5만 이상 군전체가 15만 미만 ⇒ 시설치 불가	3개읍 인구가 7만 이상 ⇒ 시설치 가능
여주군 (1읍9면)	인구-107천, 면적-608km ² (여주읍 51천) 북면 10리를 여주읍에 편입	행정구역 변경('07)으로 여주읍 인구 5만 이상 ⇒ 요건 충족	개정안의 요건과 무관

V.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근본적 개정 및 점진적 개정을 위한 대안

2. 자치법 7조의 점진적인 개정방안

- 결론적으로 군이 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을 승격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정신문화가 계층제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정신문화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므로 일시에 없애는 것은 무리이며 오히려 불필요한 논의를 가져오고 편법을 조장하므로 시와 군의 명칭을 통일시키거나 선택권을 주민에게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봄.

〈참고문헌〉

- 임승빈 외 (2000), 「효율적인 행정계층 및 구역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행정연구원.
- 임승빈(2007a). 지방자치론. 서울:법문사.
- 임승빈(2007b). 21세기 일본의 국가기능 재편과 한국에의 시사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제330회 (2007. 5. 14) 발제문.
- (2008). 자치행정 구역개편의 이론적 고찰. 국회 행정구역개편 시도지사협의회 워크숍 발제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대도시권 광역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준현 (1998), 「지방행정계층 조정과 행정구역 개편방안」, 서울:한국행정연구원.
- DiMaggio &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47-160
- Arthur C. Milspaugh (1936), *Local Democracy and Crime Control*, Washington, D.C.: Brookings Inc..
- James W. Fesler (1949), *Area and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Francis Fukuyama(2005). *State 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Cornell University Press.
- Kingdom, John (1991), *Local Government and Politics in Britain*, London:Philip Allan.
- V.D. Lipman (1949), *Local Government Areas: 1834-1945*, Oxford: Basil Blackwell.
- A.H. Walsh (1969), *The Urban Challenge to Government*(New York: Praeger, pp.58-86.
- 川西 誠(1972), 「廣域行政の研究」, 東京: 評論社, 1972.